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19일

발의자 : 양순임, 박영섭, 진선아, 경수현,
이호건, 임태근, 이인순, 이용진,
정윤주, 소형준, 고영옥, 김경이,
정해숙, 권영애

1. 제안이유

- 동물복지에 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및 요구 수준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하고, 「동물보호법」이 전부개정(2022. 4. 26.) 및 시행(2023. 4. 27.)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
- 나. 반려동물의 정의를 법에 따른 정의로 변경(안 제2조제2호)
- 다. 동물복지시행계획에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(안 제4조제2항제1호)
- 라. 저소득층 반려동물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(안 제17조제3항 신설)

마.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법 개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
변경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,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지역경제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5. 19. ~ 2023. 5. 24.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반려동물”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.

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2조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8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법 제15조”를 “법 제35조”로, “설치·운영하거나,”를 “설치·운영하거나, 법 제3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확산”을 “동물복지 향상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35조”로, “법 제15조제4항”을 “법 제36조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7항”을 “법 제3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”를 “법 제3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 제39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86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법 제21조 또는 제22조”를 “법 제45조 또는 제46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34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45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20조”를 “법 제43조”로, “법 제21조 또는 제22조”를 “법 제45조 또는 제46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39조”를 “법 제86조”로, “법 제32조제1항”을 “법 제69조제1항, 제73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45조”를 “법 제94조”로 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 제목 중 “동물보호명예감시원”을 “명예동물보호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90조”로, “동물보호명예감시원(이하“명예감시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명예동물보호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명예감시원”을 각각 “명예동물보호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</u>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반려동물”이란 사람이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. 3. (생 략) 4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<u>법 제2조 제2호</u>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·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 5.·6. (생 략) 7. “동물보호센터”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<u>법 제15조</u>에 따라 <u>설치·운영</u>	<u>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</u>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반려동물”이란 <u>법 제2조 제7호</u>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.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법 제2조 제8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5.·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 ----- <u>법 제35조</u>----- <u>설치·운영</u>

<u>하거나</u>,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여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8.·9. (생략) 제4조(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 1.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<u>확산</u>에 관한 사항 2. ~ 4. (생략) ③ (생략) 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구청장은 <u>법 제15조 제1항</u>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<u>법 제15조제4항</u>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	<u>하거나</u>, 법 제36조에 따라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8.·9. (현행과 같음) 제4조(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 <u>동물복지 향상</u>----- 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----- <u>법 제3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36조</u>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,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후단 신설>

제10조(동물보호 및 관리)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·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·관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③ (생략)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·점검결과 보호·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② (생략)

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법 제36조제4항-----

-----.

제10조(동물보호 및 관리) ① ---

----- 법 제34조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법 제86조제1항제3호-----

-----.

제11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기증 또는 입양하게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입양하게 하며,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2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,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,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

③ -----

----- 법 제45조
또는 제46조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 ----- 법 제34조제1항제3호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법 제45조-----

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게 할 수 있다.

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기증 또는 입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4조(출입·검사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, 사육·관리·보호자,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영업자 등(이하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----.

③ 법 제43조-----

법 제45조 또는 제46조-----

-----.

제14조(출입·검사 등) ① -----
----- 법 제86조-----

----- 법 제69조제1항, 제73조제1항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법 제94조-----

-----.

제17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 ①

- ② (생략)

<신 설>

제18조(동물보호명예감시원) ①

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·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(이하“명예감시원”이라 한다)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, 위촉, 해촉, 직무, 활동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제17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 ①

-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명예동물보호관) ① ----

----- 법 제90조 -----

명예동물보호관-----

② ----- 명예동물보호

관-----

③ 명예동물보호관-----
